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37

발의연월일: 2025. 5. 16.

발 의 자:조지연·김장겸·박준태

김정재 · 이인선 · 강승규

박충권 • 우재준 • 최수진

김도읍 • 박덕흠 • 이양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증대 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 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2028년 12월 31일---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 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 분의 25----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2028년 12월 3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

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④ (생 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수 있다.
- 1. ~ 3. (생 략)
- ⑥ ~ ⑧ (생 략)

<u>100분의 25</u>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2028년 1
2월 31일
100분의 25
1 ~ 2 (처해되 가수)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